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임호선·어기구·이광희

이정문 • 복기왕 • 송재봉

이학영 • 박덕흠 • 강훈식

이병진 · 이종배 · 이연희

이재관 • 박수현 • 임이자

이강일 · 임종득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

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나,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중부권의 동서 간 여객·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,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, 나아가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하고,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 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따르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바.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, 실시계획의 작성·승인,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.
- 사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

- ·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아.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따르도록 하고,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함(안 제13조).
- 자.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중부권동서횡단철도"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.
 - 2. "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"이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 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
 - 나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 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
 - 다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

- 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·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(철 도시설은 제외한다)의 건설사업
- 라.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)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(使用權原)을 확보하는 사업
- 마.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3조(기본방향)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.
 - 1. 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여객·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
 - 2.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
 - 3. 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
 - 4.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 호 협력하여야 하며,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.
 - ②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

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6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. 다 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
 - 2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
 - 3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

제2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지원 등

제7조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 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수요 예측
 - 2. 철도 건설의 경제성 · 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
 - 3.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
 - 4. 공사 내용,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
 - 5.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
 - 6. 연차별 공사시행계획
 - 7. 환경의 보전 · 관리에 관한 사항
 - 8. 지진 대책
 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서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 - ④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.
- 제9조(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) 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라 설

립된 국가철도공단(이하 "국가철도공단"이라 한다)이 시행한다. 다만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 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제9조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, 사업 구역, 사업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.
 - ② 실시계획의 승인,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서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
 - ③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

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.

- 제11조(인허가등의 의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·승인·허가·인가·동의·해제·결정·신고·지정·면허·심의·처분·등록 등(이하 "인허가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것으로보고,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- 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
 - 2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·신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
 - 3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
 - 4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・사용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・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 - 5. 「광업법」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, 같은 법 제

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(鑛口)의 감소처분
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)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
- 7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 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
- 8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
-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및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10. 「도로법」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번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)
- 11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
- 12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(私道) 개설의 허가
- 13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

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

- 14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서의 행위의 허가· 신고,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 제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·신고
- 15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(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 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)
- 16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,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
- 17.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
- 18. 「자연공원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(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19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(無緣墳墓)의 개장(改葬) 허가
- 20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

인가 또는 신고

- 21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- 2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
- 23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·신고
- 24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,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. 이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"20일"은 "30일"로 본다.
- 제12조(역세권개발사업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- 제13조(비용부담) 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4조(지역기업의 우대)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제3장 보칙

- 제15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(이하 "실시계획의 승인등"이라 한다)을 취소하거나, 공사의 중지·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·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
 - 2.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 - 3.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
 - 4. 사정이 변경되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는 경우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

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장 벌칙

- 제19조(벌칙)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
 - 2.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